

수원지방법원 2024. 6. 5 선고 2023나54853 판결 [부당이득금 반환]

재판경과

수원지방법원 2024. 6. 5 선고 2023나54853 판결

수원지방법원 2023. 1. 10 선고 2022가소318492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1. A

2. B

피고, 피항소인 C

변론 종결 2024. 5. 8.

판결 선고 2024. 6. 5.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23. 1. 10. 선고 2022가소318492 판결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 및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 A에게,

- 1) 2,863,000원 및 그중 1,711,404원에 대하여는 2023. 1. 11.부터 2024. 6. 5.까지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1,151,596원에 대하여는 2024. 1. 1.부터 2024. 6. 5.까지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고

2) 2024. 1. 1.부터 수원시 권선구 D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5, 6, 7, 8, 9, 5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19㎡에 대한 피고의 점유 종료일까지 연 1,201,2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는 원고 B에게,

1) 1,227,000원 및 그중 733,459원에 대하여는 2023. 1. 11.부터 2024. 6. 5.까지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493,541원에 대하여는 2024. 1. 1.부터 2024. 6. 5.까지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고,

2) 2024. 1. 1.부터 수원시 권선구 D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5, 6, 7, 8, 9, 5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19㎡에 대한 피고의 점유 종료일까지 연 514,8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 중 2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가. 피고는 원고 A에게 2,863,000원 및 그중 1,711,500원에 대하여 2023. 1.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 나머지 1,151,500원에 대하여 2024.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 2024. 1. 1.부터 수원시 권선구 D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별지 도면 표시 5, 6, 7, 8, 9, 5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19㎡(이하 '이 사건 점유부분'이라 한다)에 대한 피고의 점유종료일까지 연 1,201,2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나. 피고는 원고 B에게 1,227,000원 및 그중 733,500원에 대하여 2023. 1.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 나머지 493,500원에 대하여 2024.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 2024. 1. 1.부터 이 사건 점유 부분에 대한 피고의 점유종료일까지 연 514,8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제1심판결 중 제1심 공동피고 E에 대한 부분은 항소가 제기되지 아니하여 분리·확정되었다.

제1심에서 피고(C)에 대하여 원고 A은 부당이득금 845,776원 및 그 지연손해금과 2022. 4. 5.부터 이 사건 토지의 인도완료일까지 연 2,893,8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부당이득금을, 원고 B는 부당이득금 362,476원 및 그 지연손해금과 2022. 4. 5.부터 이 사건 토지의 인도완료일까지 연 1,240,2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부당이득금을 청구하였다가, 원고들은 이 법원에서 부당이득금 일시금의 청구금액을 확장하고, 부당이득금 정기금의 연 액수를 감축하며 정기금의 기산일과 종기의 내용(점유 부분 토지의 범위)을 변경하는 등으로 위와 같이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청구취지와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8. 2. 3. 이 사건 토지(수원시 권선구 D 대 26m²)를 매수하고, 2018. 2. 22. 원고 A은 이 사건 토지 중 7/10 지분에 관하여, 원고 B는 이 사건 토지 중 3/10 지분에 관하여 각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21. 7. 15. 임의경매절차에서 수원시 권선구 F 외 2필지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콘크리트지붕 4층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매수하고, 같은 날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 현재까지 이 사건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다. 그런데 이 사건 주택의 일부는 경계를 침범하여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점유부분(별지 도면 표시 5, 6, 7, 8, 9, 5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19㎡) 지상에 건립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수원지사에 대한 측량감정축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부당이득 반환의무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2021. 7. 15.부터 이 사건 주택의 소유자로서 원고들이 공유하는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점유부분을 이 사건 주택의 부지로 점유·사용하여 왔으므로, 정당한 점유권원을 주장·증명하지 못하는 이상 원고들에게 원고들의 지분비율에 따라 이 사건 점유부분에 대한 점유종료일까지의 이 사건 점유부분 토지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금과 이에 대한 법정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부당이득의 반환 범위

1) 통상의 경우 부동산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이득액은 그 부동산의 임료 상당액인바, 이 법원의 주식회사 G에 대한 임료감정축탁 결과에 따르면 이 사건 점유부분에 대한 2021. 7. 15.부터 2024. 3. 15.까지 보증금 없는 경우 연 임료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사실이 인정되고, 2024. 3. 16. 이후의 연 임료도 아래 표 연번 4번 기재 금액과 같은 액수일 것으로 추인된다.

1	2021. 7. 15. ~ 2021. 12. 31.	1,609,000
2	2022. 1. 1. ~ 2022. 12. 31.	1,649,000
3	2023. 1. 1. ~ 2023. 12. 31.	1,696,000
4	2024. 1. 1. ~ 2024. 3. 15.	1,716,000

2) 위 인정사실을 기초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반환할 이 사건 점유부분에 대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계산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① 2021. 7. 15.부터 2023. 1. 10.까지 발생한 부당이득금은 원고 A의 경우 1,711,404원, 원고 B의 경우 733,459원이고, ② 2023. 1. 11.부터 2023. 12. 31.까지 발생한 부당이득금은 원고 A의 경우 1,154,674원(누적 합계 2,866,078원),

원고 B의 경우 494,860원(누적 합계 1,228,319원)이며, ③ 2024. 1. 1. 이후로는 발생하는 부당이득금은 원고 A의 경우 연 1,201,200원, 원고 B의 경우 연 514,800원이 된다(금액 계산에서 원 미만은 반올림 한다).

2021. 7. 15.	2021. 12. 31.	1,609,000원	170일	524,578원	224,819원
2022. 1. 1.	2022. 12. 31.	1,649,000원	365일	1,154,300원	494,700원
2023. 1. 1.	2023. 1. 10.	1,696,000원	10일	32,526원	13,940원
합계	1,711,404원	733,459원			
2023. 1. 11.	2023. 12. 31.	1,696,000원	355일	1,154,674원	494,860원
누적합계	2,866,078원	1,228,319원			
2024. 1. 1.	피고 점유종료일	연 1,716,000원	연 1,201,200원	연 514,800원	

다. 소결론

1)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① 2021. 7. 15.부터 2023. 12. 31.까지의 부당이득금 2,866,078원 중 원고 A이 구하는 2,863,000원 및 ㉠ 그중 2021. 7. 15.부터 2023. 1. 10.까지의 부당이득금 1,711,404원에 대하여는 2023. 1. 11.1) 부터 이 판결 선고일2) 인 2024. 6. 5.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법정이자3) 또는 지연손해금을, ㉡ 나머지 2023. 1. 11.부터 2023. 12. 31.까지의 부당이득금 1,151,596원(= 2,863,000원 - 1,711,404원)에 대하여는 2024. 1. 1.4) 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6. 5.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위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법정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하고, ② 2024. 1. 1.부터 피고의 이 사건 점유부분의 점유종료일까지 연 1,201,2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또한 피고는 원고 B에게 ① 2021. 7. 15.부터 2023. 12. 31.까지의 부당이득금 1,228,319원 중 원고 B가 구하는 1,227,000원 및 그중 ㉠ 2021. 7. 15.부터 2023. 1. 10.까지의 부당이득금 733,459원에 대하여는 2023. 1. 11.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6. 5.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위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법정이자 또는

자연손해금을, ㉠ 나머지 2023. 1. 11.부터 2023. 12. 31.까지의 493,541원(= 1,227,000원 - 733,459원)에 대하여는 2024. 1. 1.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6. 5.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위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법정이자 또는 자연손해금을 각 지급하고, ㉡ 2024. 1. 1.부터 피고의 이 사건 점유부분의 점유종료일까지 연 514,8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위 각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원고가 이 법원에서 확장 및 감축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재판장판사김순한

판사조정민

판사조현준

별지

- 1)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 이후로서 부당이득금 계산 종기일 다음 날이다. 이하 같다.
- 2)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내지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된다. 이하 같다.
- 3) 민법 제749조 제2항, 대법원 2016. 8. 18. 선고 2016다4181 판결 등 참조. 이하 같다.
- 4)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 이후로서 부당이득금 계산 종기일 다음 날이다. 이하 같다.